

세무와회계저널
제8권 제4호 2007년 12월 pp.223~242
한국세무학회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전산화 사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를 중심으로 -

김홍권** · 김영태***

<요 약>

본 사례는 지방세체납액 관리에 대한 전산화 사례이다. 일반 지방세목과는 달리 지방세 체납액은 여러 가지의 세목들의 단순 집합체이어서 일관되는 논리성이나 체계성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지방세 체납액의 특성으로 모든 체납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납징수기법은 찾기가 곤란하다. 체납징수특성상 각 체납자를 일일이 대면해야하는 과정이 있어 현금징수에까지 이르는 체납관리의 전 과정이 전산화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과 더불어 지방세 체납액 관리는 지방세 자체의 소액, 납세인원의 광범위성으로 노동집약적 업무특성을 가진다. 납부독려행위는 현행 체납관리 전채업무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납부독려방식 중 체납처분예고서 송달을 통한 납부독려방식은 필연적으로 높은 징수효율성을 가진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환경상의 한계로 이러한 징수효율적인 체납처분예고가 전 체납자에게 발송되지 못하고 일부 고액체납자위주로 시행되어 왔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이러한 체납처분예고서를 전산화시키어 전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예고문을 송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높은 징수실적과 인력절감, 효율적인 체납관리징수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전산화 사례를 통하여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전산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서 점점 누증되고 있는 비체계적이고 비논리적인 성격을 갖는 지방세 체납액관리가 효율적·체계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주제어> 지방세, 체납세금, 체납관리업무, 체납처분예고, 전산화

* 2006년도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최 ‘제7회 공공혁신 전국대회’ 대상수상 사례임

** 세무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세무과 체납관리계장, honggoun@hanmail.net, 042-611-2262, 제1저자

***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ytkims@hanmail.net, 042-629-7591, 공동저자

I. 서 론

조세에는 과세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의 과세권자는 국가이고,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체납액은 조세의 각 개별 세목명칭이 아니고, 각 개별세목에서 부과된 조세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못할 때 그 조세는 체납액이 된다.(권강웅, 2007) 현대 민주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정치권력을 분권화시키는 지방화, 자치화 경향이 있다. 지방자치제를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005년 기준으로 지방세는 36조원을 징수하였고 4조원을 체납액으로 남겼다.¹⁾(행정자치부, 2006 지방세정연감, p.11) 지방세 체납액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지방세입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김홍권, 2003, p.44)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전산화 사례를 통하여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전산화 가능성을 보여주므로 점점 누증되고 있는 비체계적이고 비논리적인 성격을 갖는 지방세 체납액관리가 효율적·체계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II. 이론적 검토

1. 지방세 체납액의 특징

지방세는 16개의 세목(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목들에서 납부기한 내에 지방세가 납부되지 못하면 체납세금이 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과세표준, 세율 등의 일련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지방세 체납의 유형에는 납세자의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도 있고 무재산으로 인해 반영구적인 것도 있으나, 어느 것을 막론하고 지방세 체납액은 지방세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김동집, 199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김중환, 1997, pp.16-18)

첫째, 지방세의 체납은 세수예측의 착오를 가져와 예산운영을 어렵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지방재정법은 그 책무를 명문화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회계연도내의 재정수지에 관한 예정적 계획으로 예산안을 만들고 이를 지방의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하고 집행후 그 결과를 의회의 결산심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집행부, 지방의회, 주민이 1회

1) 내국세는 104조원을 징수하였고, 14조원을 체납액으로 남김(국세청, 2006 국세통계)

계연도의 지방정부의 예정적 사업에 대하여 합의한 문서이기 때문에 당초의 의도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세입이 감소하게 되면 지방정부는 예정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차입에 의존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자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김인숙, 2002) 이렇게 되면 건전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둘째, 체납의 용인은 다른 납세자들에게 무임승차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킨다. 무임승차는 다른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하여 줌으로써 자신은 그 행동을 하지 않고도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즐기는 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다. 이는 Hume이나 A. Smith가 탐지하지 못했던 자유방임의 중심적인 문제로서, 집단이나 단체생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며 특히 정부와 납세자 간에도 흔히 볼 수 있다.(Mendez, 1992, pp.54-56) 주민은 누구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정부에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이를 부담한 사람과 동일한 편익을 받기를 바란다. 따라서 주민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공공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세금을 피하려고 한다.

셋째, 주민소득의 불공평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지방세 체계를 형성하는 기준으로서 조세부담의 공평은 매우 중요하다.(홍학균, 1988) 조세부담의 공평이라 함은 경제적으로 동등한 사람을 세제상 동등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세가 부과되기 전에 두 사람이 동등한 경제후생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세 후에도 동등한 경제후생을 갖게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이필우, 1996, p.79) 지방세를 체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과 세금을 납부한 사람 간에 부담의 불공평이 일어나며, 특히 체납액이 결손처분 되는 경우에 이러한 불공평은 커지게 된다.

넷째, 지방세 체납은 지역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의 원인이 된다. 지방세제의 목적중 하나는 일정한 재원을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이전할 때 지역사회 전체에 부과되는 후생의 손실을 극소화하는데 있다. 그런데 지방세체납은 자원배분에 있어서 왜곡을 가져오며, 이는 지역의 한정된 자원의 부문간의 이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이와같이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사회·경제적으로 사회정의를 흔들며 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게 하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김태호, 2007)

체납액은 일반적인 지방세 세목내용과는 달리 체계적·논리적인 정립기준을 정할 수 없다. 단지 체납액의 크기를 기준으로 고액체납자/소액체납자로 구분할 수 있을 뿐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채권의 하나이며, 한 체납자가 보유하는 전체 체납액 단위로 접근·관리되어 진다. 지방세의 각 세목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물건)을 기준으로 관리되어 진다.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과세표준, 세율이 결정된다. 이러한 과세요건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다과(多寡)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²⁾ 그러나 지방세 체납액은 이러한 지방세목들에서 결정된 세액들이 체납액이

2) 토지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각 납세자의 부동산 보유량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은 일반적인 지방세목에서 보이는 현상이 아닌 예외적인 세목임.

되면 각 개별 세액은 단순한 채권액으로 변화되고 채납관리는 채납자(납세자) 기준으로 총 채납액 단위로 관리되어 진다. 일부 특정 세목의 채납액은 그 채납자의 일부 채납내역에 불과한 것이다. 채납관리는 채납자의 재산이 현재 있는지 여부가 채납관리의 중심이 되어 현재 강제집행 가능한 소유 부동산이 있는지, 소유 예금이 있는지, 장래 받을 급여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등 채납자 자체의 재산력에 초점이 맞추어 지게 된다. 여러 가지 지방세목에서 단순 집합으로 모여든 채납액은 일반 지방세와는 달리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도 없고, 마련할 필요도 없게 된다. 채납액을 징수하는 기법에 있어서 이러한 비체계적·비논리적 채납액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채납자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징수기법 개발이 어려운 것이다.(김혜랑, 1999) 즉 모든 채납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징수기법을 고안하기 어렵다.³⁾

지방세채납액은 국세 채납액에 비하여 소액 채납자가 많다. 2005년 국세채납액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채납자가 60만명으로 전체 국세채납자의 88%에 이르는 반면, 지방세 채납에서는 유성구의 예를 보면 1천만원 이하의 채납자가 3만 4천명으로 전체 채납자의 99.6%에 이른다. 이렇게 지방세가 소액채납자가 많은 것은 국세와 지방세목의 금액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국세의 경우 104조원 징수에 납세인원이 1천 5십만명에 이르지만 지방세의 경우는 36조원 징수에 납세인원이 국세 납세인원의 수백인 수천만에 이른다.⁴⁾ 지방세 채납액의 경우 재산세, 자동차세, 개인균등할주민세 등의 채납액이 주종을 이루는데, 이러한 세목은 소액이면서 납세자가 광범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⁵⁾. 전체 채납액 기준으로는 국세 채납액이 지방세 채납액보다 월등히 많지만 국세와 지방세 각 세목의 특징으로 인하여 지방세 채납액은 소액이면서 많은 채납자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지방세 채납액은 비논리적·비체계적이고, 채납관리는 각각의 채납자를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수많은 채납자를 관리해야하는 업무특성상 지방세 채납관리는 자연히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박병목, 1997) 채납징수업무를 제외한 지방세 일반부과과정은 특정 과세대상의 기준으로 과세기준일, 과세표준, 세율 등의 일련의 체계가 있어 업무 전 과정이 전산화가 용이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높은 반면, 지방세 채납관리는 현금징수에 까지 이르러야 하는 특성상 채납자를 개별적으로 직접 대면해야 하는 과정이 있게 되어 채납관리 전 과정의 전산화는 곤란하다. 채납자를 일일

3) 지방세 채납징수를 위한 서울시의 38기동팀의 징수방법을 보면 체계적·일률적 징수기법이 아닌, 각 채납자마다 그 채납자에 맞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용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지방세 채납액의 특징 때문이다.

4)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납세인원의 통계가 없음, 지방세 과세대상을 통하여 납세인원을 추측하면, 과세건수가 많은 대표적인 지방세목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개인균등할주민세를 들 수 있음, 재산세의 경우 과세대상이 주택, 건물, 토지로 구분되는데, 전국의 주택 수는 1천1백만호, 토지 소유자 수는 1천3백만명에 이르고, 자동차세의 경우 현재 등록자동차 대수가 1천5백만대이며, 개인균등할주민세의 경우 각 세대주에 과세되는데 현재 1천7백만 세대가 등록되어 있음.(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통계자료, 2007) 이러한 현황을 추정해 볼 때 지방세의 납세인원은 국세의 수백에 이름을 추측할 수 있음.

5) 유성구의 경우 2006년 재산세로 16만건이 과세되었음. 30만원 미만 납세건수가 15만8천건으로 전체건수의 98.8%에 이르고, 자동차세의 경우 4,000cc 자동차세가 1회에 60만원, 2000cc의 경우 26만원에 불과하며, 개인균등할주민세의 경우 건당 최고금액이 1만원에 불과하여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소액 다수건수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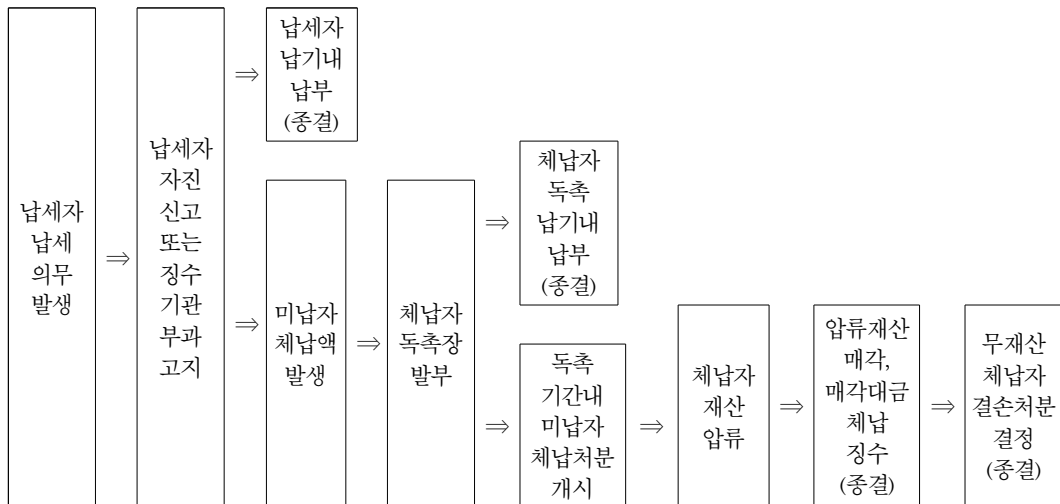
이 접촉·독려해야하는 과정이 일반 세목과는 달리 필요하게 되어 징수액 대비 징세비가 일반 지방세목보다 크게 된다.

2. 지방세 체납관리업무의 구성

가. 지방세의 징수절차

지방세의 신고 및 부과 납부, 체납액 납부, 결손처분 등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지방세 징수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지방세 징수절차



납세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일정요건을 갖추어 징수기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다. 징수기관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을 토대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납세자는 발급받은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되면 징수절차는 종결된다.⁶⁾ 납세자의 신고절차 없이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 고지서를 송달·납부케하는 징수방법⁷⁾도 있다.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도 미신고, 과소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미신고, 과소신고액을 결정하여 가산세와 같이 납세자에게 고지·납부케 하여 징수절차를 종결하기도 한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 수령후 납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그 세액은 체납액이 되고 과세권자는 그 체납액에 가산금을 가산한 납세고지서(독촉장)를 납세자에게 다시 고지하게 된다. 독촉고지 납부기한내에 체납세액을 미납하게 되면 과세

6) 신고납부제도라하고, 이러한 세목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있음.

7) 정부부과제도라하고, 이러한 세목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이 있음.

권자는 즉시 체납처분절차에 들어간다. 체납처분절차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발견된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현금, 채권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징수불가능하다는 결정의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모든 징수절차를 종결짓게 된다. 이러한 지방세 징수절차과정에서 체납관리업무의 범위는 체납액이 발생되어 독촉장을 발송하는 과정에서부터 결손처분절차까지를 말한다.

나. 체납관리업무의 유형

체납관리업무는 크게 체납처분 행정행위와 비행정행위로 구분된다.⁸⁾ 체납관리에서 행정행위는 독촉장 교부행위, 재산압류행위, 공매통지행위, 결손처분행위 등을 말하고, 비행정행위는 행정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로⁹⁾ 납부독려행위가 대표적이다.(박중호, 1998) 체납관리담당자의 업무투입시간 측면에서 행정행위와 비행정행위는 각각 20%, 80%의 비중으로 비행정행위가 업무투입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행정행위중 납부독려행위가 전체 체납관리 업무투입시간의 70%를 차지한다.¹⁰⁾ 행정행위는 대량적으로 체납자를 직접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전산화가 되어있어 업무처리 소요시간이 많지 않지만 비행정행위는 개별 체납자와 일일이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업무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다. 납부독려업무의 중요성

체납관리업무에서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매월 정형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세 체납액이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되고¹¹⁾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의 독촉장을 교부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과정은 정형적이어서 개별 체납자 접촉 없이 대량적으로 전산처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업무담당자는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고 행정행위를 수행한다. 일반 지방세목의 업무와는 달리 체납액 관리업무가 지방세무담당자에게 곤란한 업무로 다가서는 것은 이러한 정형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체납자 개개인에 대한 납부독려행위로 인한 것이다.

납부독려행위는 체납자 개개인을 일일이 접촉해야하고, 납부하지 않으려는 체납자를 설득하여 납부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체납관리업무중 가장 까다롭고 가장 인력이 많이 필요한 중요한 업무

8) 행정행위(행정처분)란 행정법상의 용어로 행정주체가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를 말함.(홍성운, 행정법, p.280)

9) 체납관리의 비행정행위로 납부독려행위, 민원전화응대행위, 내방민원상담행위, 기타 내부적 재산조사행위 등이 있음.

10) 대전광역시 B구청의 경우 1년에 4개월(5,6,10,11월)이상을 전 체납자 60,000명의 납부독려를 위하여 600여명의 구청 전 직원이 투입되고 있음, 이러한 투입인력은 B구청의 체납관리담당공무원 6명에 대비하여 환산하면 체납관리업무에서 납부독려행위가 전체 체납관리업무시간의 70%이상으로 예측할 수 있음.

1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 매월 지방세 체납액이 5억원 정도 발생되고 있음.

이다.(배임용, 1997) 징수기관이 납부독려를 하여 체납자가 조기에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그 이후의 체납관리비용¹²⁾은 발생되지 않게 되므로 징세비용이 절감되고, 납세자 측면에서도 더 이상의 체납처분행위가 없게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 훼손이 방지되며 체납처분비도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되므로 납부독려행위는 징수기관에게나 체납자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중요한 업무이다.

라. 납부독려방식의 종류

납부독려방식에는 체납자와 직접대면독려방식, 전화독려방식, 체납처분예고서를 통한 독려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대면독려방식은 체납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므로 체납자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체납자도 직접 대면함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이해를 높여 체납액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유연용, 1999)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징수기관이 일일이 각 체납자를 찾아봐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인력과 시간 등에서 체납징수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접대면독려방식은 전체 체납자가 아닌 일부 고액체납자위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이다.¹³⁾ <표 1>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으로 체납자 1인당 체납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체납자를 구분하였다.¹⁴⁾ 유성구청의 총체납액은 2006년 10월 현재 118억원이다. 그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체납자는 220명으로 60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500만원이하 체납자는 34,127명으로 58억원의 체납액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체납환경에서 직접대면독려방식은 고액체납자 220명에게 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이다.

전화독려방식은 직접대면방식보다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나 체납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에 한계가 있고, 전 체납자 34,000여명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또한 전화독려방식은 사전에 체납자의 전화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체납환경에서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독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편을 통한 체납처분예고서 송달방식만이 가능한 체납독려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납처분예고서방식¹⁵⁾이란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수행하기 전에 각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예고서를 우편을 통하여 예고하고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는 예고문구의 서면을 송달하는 방식이다. 납세자편에서 징수담당자를 직접대면하지 않음에 따라 대면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체납자가 구체적인 체납처분에 대해 예고받음에 따라 예고기한내 납부하여 재산압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징수기관에게도 직접대면

12) 재산조사, 재산압류, 고지서 추가발행, 추가 독려 비용 등

13) 서울특별시의 38징수기동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임.

14) 체납액 500만원의 구분은 유성구청 체납관리담당 공무원 4인이 직접 체납자와 대면하여 세밀하게 체납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 가능한 체납자수를 산출하기 위한 금액임.

15) 체납처분예고에는 부동산압류예고, 부동산공매예고, 자동차번호판영치예고, 급여압류예고, 예금압류예고, 동산압류예고, 관허사업제한예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제공예고, 출국금지조치예고, 형사고발예고 등 다양함.

이나 전화독려방식에 비하여 인력과 시간이 절약됨은 물론 수많은 체납자라 할지라도 전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려가 가능하게 되므로 징수액도 높게 되어 직접대면방식 및 전화독려방식보다 징수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윤우영, 2000). 모든 체납자에게 모든 체납액을 징수해야하는 공평과세 달성 측면에서도 체납처분예고서 송달방식은 직접대면방식이나 전화독려방식보다 매우 우수한 체납독려방식이다.

직접대면방식과 전화독려방식, 체납처분예고서 송달방식은 서로 배타적인 독려방식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용할 수 있는 독려방식들이다(임종만, 2001). 직접대면방식 및 전화독려방식은 일부 고액 체납자에게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더불어 체납처분예고서 송달방식은 고액체납자를 포함한 전체 체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납부독려방식이다.

〈표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체납액 현황 (2006. 10월 현재)

(단위 : 명, 건, 백만원, %)

구 분	계		5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수 치	비 율	수 치	비 율	수 치	비 율
체납자수	34,347	100.0	220	0.6	34,127	99.4
체납건수	72,441	100.0	2,695	3.7	69,746	96.3
체 납 액	11,881	100.0	6,036	50.8	5,845	49.2

III. 체납처분예고서의 전산화 운용 사례

본 사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체납관리분야에서 체납처분예고서 송달을 전산화하여 전 체납자에게 우편송달한 사례로 전산화 과정과 그 성과를 보여 준다.

<표 1>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체납액 현황에서 보듯이 34,000여명의 많은 체납자를 4명의 체납담당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납처분예고서 송달방식의 납부독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예고서 발송의 전산화 이전에는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예고서가 송달되지 못했다. 일부 고액체납자에게만 시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매월별 체납액의 변동성

체납처분예고서의 본문에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정보 중 하나는 체납자의 현재 정확한 체납건수와 체납금액이다. 한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매월 변동하는 특성이 있다. 그 체납자에 대해 새로운 체납이 추가 발생하여 체납액이 증가할 수 있고, 또 일부 납부하여 체납액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체납액의 증감이 없더라도 매달 증가산금이 1.2%가 가산되어서¹⁶⁾ 한 체납자의 정

확한 체납액은 매월 유동적이다. 이러한 체납액의 유동성으로 인해 체납처분예고서에 기재되는 체납금액의 유효기간은 그 달 말일까지 밖에 유지되지 못한다. 다음달이 되면 체납자의 체납액은 변동된다.

② 과세대상위주의 지방세 전산시스템

일반 지방세목의 구조가 납세자기준이 아닌 과세대상(물건)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세전산프로그램도 일반적으로 과세물건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납관리분야는 일반세목분야와는 달리 과세물건별 체계는 의미가 없고 체납자라는 인적 기준의 전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구조가 과세물건 기준임에 따라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의 구조도 과세물건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다. 총 지방세입 중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체납액관리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은 이러한 체납액의 특성을 심분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과세물건 기준의 세무전산 구조하에서는 체납자기준의 전산작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체납자 기준의 체납처분예고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체납건수, 총체납액, 체납내역 등을 일일이 전산을 열람하여 기재하는 수작업이 요구되었다.

③ 전월의 수납내역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됨

체납처분예고서를 시행·발송하기 위해서는 전월(前月) 납부된 체납액을 체납파일에서 삭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체납세금의 납부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전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취합되는 수납정보를 반영 체납액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납기(일반적으로 체납고지서 납기는 매월 말일을 납기한으로 함) 경과 후 1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매월의 정확한 체납액은 매월 10일 이후에나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체납처분예고서에 정확한 체납액의 기재를 위해서는 매월 10일 이후부터 체납처분예고서 발행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매월 체납액이 변동되고, 전월의 수납자료가 정리된 후 10일 이후에 정확한 체납액이 확정된 후 체납처분예고서 발송을 위해서는 수작업을 통한 체납건수·체납액 기재, 수작업의 우편발송 작업 등이 필요하다. 예고서상의 체납액 납부기한을 그 달 말일로 하면 내부적으로 체납처분예고서 작성·발송하는 작업의 시간여유는 10일 남짓에 불과하다. 이러한 10여일 동안 34,000여명의 전체 체납자에 체납처분예고서 발송작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전에는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예고서를 발송하지 못하고 소수의 수백명의 고액체납자에게만 수작업을 통한 체납처분예고서가 송달되었다. 체납처분예고서의 징수효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현실적인 장애로 34,000여명의 전체 체납자를 상대로 하는 체납처분예고서는 불가능하였다.

1. 체납처분예고서의 초기 전산화 운용 사례

유성구청은 가장 효율적인 징수방법의 하나로 판단되는 체납처분예고통지를 수 만명의 체납자에게 10여일내에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고, 연구결과 워드프로세서 '혼글'에서 '메일머지'라는 기능을 통한 전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예고서를 발송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메일머지 기능은 청첩장 등을 발송할 때 결혼안내문구 등은 동일하나 주소, 성명 등이 다르면서 많은 사람에게 일시에 발송해야 할 경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혼글 워드프로세서 기능이다.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에 대한 예고문구는 같으나 체납자명, 체납자주소, 총 체납건수, 총 체납액만 다르게 하여 혼글의 메일머지 기능을 이용 수 천명의 체납자에게 일시에 발송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난관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서 출력된 수천명의 체납자 엑셀자료를 혼글의 메일머지 기능에 맞게 한글자료로 변환하는 것이었다. 메일머지 기능은 혼글기능이고 체납자파일은 엑셀자료이어서 엑셀 자료를 혼글 자료로 전환시키게 되면 엑셀표가 있는 상태로 한글자료로 전환되었다. 혼글의 메일머지 기능을 위해서는 한글워드에서 엑셀표가 없어져야하고 각 체납자의 성명, 주소, 체납건수, 체납액 등이 줄을 바뀌어 차례로 나열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난관은 MS워드프로세서를 매개체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해결되었다.

엑셀과 혼글은 만든 회사가 상이하여 호환이 안되었고, 같은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은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이라도 호환이 되었던 것이다. 엑셀 체납자료 → MS워드자료로 변환 → 한글워드 자료로 변환되는 과정을 통하여 난관을 해결하였다. <그림 2>는 이렇게 수천명의 체납자에게 발송되었던 최초의 체납처분예고문 예시이다.

〈그림 2〉 최초 체납처분예고문

체납처분 예고통지

우편번호 : {{4}}

주 소 : {{2}}

성 명 : {{1}} 귀하

=====

평소 구 세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①부동산 공매(강제매각), ②직장 급여 압류, ③금융기관 예·적금 압류 ④소유 동산(가전제품, 가구 등)압류 및 공매, ⑤전국 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 제공, ⑥형사고발 입건 등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오니,

아래와 같이 자진납부기간내에 체납세금을 납부하시어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 체 납 액 : {{3}}원

2. 납부기한 : 2005. 10. 31.

3. 납부방법 : ○ 우편물 고지서로 납부

○ 유성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유성구청 계좌로 입금 납부.

하나은행 658-061651-19105 예금주 유성구청

입금자는 필히 납세자(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 의 처 : 유성구청 세무과 체납관리담당

042-611-2266

2005. 1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2. 체납처분예고서의 완전 전산화 운용

체납처분예고서의 초기 전산화 운용으로 적은 시간·적은 인력으로 수많은 체납자들에게 예고서를 발송하여 큰 징수효과를 얻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직접적으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엑셀자료, MS워드자료 및 한글의 메일머지 기능을 사용해야 했고, 예고서 서식이 일반 A4용지를 사용함으로 징수기관인 유성구청장 직인을 개별적으로 수작업 날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체납처분예고서의 창봉투 발송을 위한 수작업이 필요했다.

〈그림 3〉 체납처분예고서 출력을 위한 지방세 전산 입력창

이러한 수작업들을 위해 10여명의 인력이 꼬박 2~3일이상의 작업을 해야 했다. 또한 체납처분 예고서내에 기재되는 체납내역은 총 체납건수와 총 체납액이어서 체납액의 각 세목별 금액, 부과기간 등 더 상세한 체납내역은 표시될 수 없었다. 이것은 체납자가 통지를 받고 충분한 세부 체납내역을 알 수 없음에 따라 재차 징수기관에 전화 등을 통하여 세부내역을 문의함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체납내역을 전산 열람하여 답변해야하는 인력의 소비가 있었다.

〈그림 4〉 체납처분예고서 출력 예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호
세무과 ☎ 042-611-2236
305 - 702

대전보훈
무면취급소
요금후납

문의처 (Tel) 042-611-2262

대전 유성구 반석동
(94/3) 3층동

귀하
3 0 5 - 1 5 0

압 류 예 고 통 보 서

1. 귀하께서는 납부해야 할 지방세가 아래와 같이 체납되어 수차 독촉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 재독촉하오니 아래의 납기일까지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부동산, 차량압류 및 공매, 채권(보증, 예금)압류, 신용불량등록]이 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27조의 규정

납기일자: 2006년09월30일		미납된 지방세 명세				
세 목	과세년월	구 분	고지번호	합 계	본 세	가 산 금
주민세(양도소)	2006/07	수시분	545-000014	28,062,200	28,931,100	1,131,100
주민세(주소지)	2006/08	정기분	545-018767	5,780	5,620	160
	/			0	0	0
	/			0	0	0
	/			0	0	0
	총 2 건		합 계	28,067,980	28,936,720	1,131,260

2006년09월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체납처분예고서 출력을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화 하였다. 지방세관리보수업체와 상의하여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지방세 전산시스템내에 체납처분예고통지 발행을 프로그램화하였다. 이로 인해 한글의 메일머지 기능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울러 체납자에게 총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물론 체납세부내역도 표시될 수 있다

록 프로그램을 보완 개선하였다. <그림 3>은 이러한 사항이 보완된 지방세 전산화프로그램이다.

또한, 각 체납처분 예고서의 개별용지에 직인을 날인해야하는 수작업을 없애기 위하여 미리 직인이 날인된 인쇄용지를 개발하였다. 더불어 체납자의 체납처분에 대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고문 인쇄서식 뒷면에 체납처분에 관한 조세법령을 상세히 기록하여 체납처분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였다. 수작업이 필요한 창봉투 발송작업을 없애기 위하여 자동 봉합기를 이용하였다. 봉합기계를 통한 봉합으로 간편하게 체납처분예고서를 봉합하여 우편발송하게 되었다. <그림 4>는 전산프로그램과 인쇄서식을 이용하여 출력된 체납처분예고서 출력예시물이다.

IV. 체납처분예고문의 전산화 성과 및 개발요인

1. 체납처분예고문의 전산화 성과

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건수와 징수금액의 증가

<표 2> 대전광역시 자치단체간 연도별 체납징수건수 추이

(단위 : 건, %)

구 분	2001		2002		2003(최초도입)		2004		2005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A구	19,242	100	24,296	126	25,286	131	31,719	165	30,340	158
B구	38,916	100	40,283	104	59,088	152	47,085	121	46,007	118
C구	29,572	100	41,068	139	39,848	135	41,088	139	37,688	127
유성구	17,994	100	21,834	121	32,649	181	29,472	164	34,695	193

<표 3> 대전광역시 자치단체간 연도별 체납징수금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1		2002		2003(최초도입)		2004		2005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A구	715	100	1,044	146	920	129	1,049	147	1,016	142
B구	1,162	100	1,069	92	1,611	139	1,278	110	1,238	107
C구	828	100	1,082	131	991	120	944	114	977	118
유성구	548	100	682	124	870	159	873	159	975	178

유성구청에서 체납처분예고서를 전산화 한 것이 2003년부터이다. 전산화의 징수건수와 징수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예고서를 전산화한 유성구와 전산화하지 않은 대전광역시 타구의 연도별 징수추이를 비교하였다. 대전광역시외에 타 시도의 징수실적을 비교하고 싶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통계자료확보의 곤란성으로 대전광역시에 한정하였다.¹⁷⁾ <표 2>와 <표 3>은 체납징수액 중 1백만원이하의 징수실적이다. 순순하게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예고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액자의 징수액은 제외시켰다. 각 연도의 비율은 2001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연도별 증가 정도를 표시한다.¹⁸⁾ <표 2> 징수건수 비교에서 유성구의 경우 체납처분 예고서가 최초 도입된 2003년부터 징수건수가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각 구청이 2001년보다 징수건수가 다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서로 구청간의 치열한 징수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⁰⁾ 전산화를 하지 아니한 타구의 매년의 징수증가는 일정하게 소폭 증가했으나 유성구청은 2003년 이후 큰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가는 체납처분예고서의 발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에도 A,B,C구에서는 체납처분예고문을 발송하지 않고 직접 전 직원이 납세자를 직접 상대하여 징수독려를 수행하고 있고, 유성구청은 체납자에게 직접독려 없이 체납처분예고문을 통하여 전 체납자에게 납부독려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징수효과로 유성구청은 지방세 체납징수대회에서 2003년이후 2006년까지 연속 4년 1위를 수상하고 있다. <표 3>의 징수금액에서도 예고서가 최초 도입된 2003년에 유성구의 징수금액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2001년대비 59%증가) 유성구의 경우 체납처분 예고서를 최초 도입한 2003년 이후부터는 타구에 비하여 가장 큰 징수 증가폭(2004년 59%, 2005년 78%)을 확인할 수 있다.²¹⁾

17)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대회는 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전국 200여개의 기초자치단체간의 지방세수규모차이가 커서 경진대회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18) 체납처분예고서의 징수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징수율(징수액/체납액)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100만원 이하에 대한 체납액 통계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징수액은 체납액이 수납처리되어 확정된 금액이지만 일정시점의 체납액(분모)은 진행중에 있는 금액이라 할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시점별 매년의 체납액이 파악될 수 없음. 다만 결산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매년의 체납액을 파악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고액체납액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체납건수에 대한 자료는 없음. 소액 체납액과 주로 연관되는 지방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개인균등할주민세임. 이러한 세목의 과세대상은 자동차 등록대수, 토지 및 건물 수, 전국 세대수 등임, 소액 세금의 경우 이러한 과세대상들은 소득과는 달리 시간의 경과에 따라 큰 변동을 가지는 과세대상들이 아니어서 본 연구에서는 일정시점의 소액의 징수금액, 징수건수를 기준으로 체납처분예고서의 징수효과를 파악하였음.

19) 2001년 대비 81% 증가, 타구의 경우 증가비율이 31%, 52%, 35%에 불과함

20) 이러한 구청간의 치열한 징수경쟁으로 인하여 대전광역시는 전국 16개 시·도 체납경진대회에서 매년 1~2위를 수상하고 있음. 2005년의 경우 대전시의 과년도 체납징수율이 24.7%로 전국 평균 18.9%보다 높았고, 징수율 1위를 하였음.(행정자치부 2006지방세정연감, p.46)

21) 예고서가 도입되지 않았던 2002년의 경우 유성구는 오히려 A구청(46%), C구청(31%)에 비하여 적은 증가(24%)를 보여 징수실적이 좋지 않았음.

나. 효율적 체납징수시스템의 구현

대부분의 지방세 체납관리조직의 경우 과도한 체납액과 체납자관리로 인하여 체납관리의 시스템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법령에서 제시되는 최소한의 수준²²⁾에서 소극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례의 유성구에서는 체납처분예고가 전산화됨에 따라 체납관리시스템이 생성·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세 체납관리 업무 중 70%를 차지하는 납부독려행위가 체납처분예고시스템으로 대체됨에 따라 높은 징수효과와 동시에 체납관리업무가 전체적으로 체계를 가지는 업무로 전환되었다. 체납처분예고서로 체납독려행위를 대체함에 따라 절감된 인력으로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미흡했던 고액체납자 관리에 충실하게 되었다. 고액체납자 관리가 더 세밀화, 체계화 됨에 따라 고액체납액 징수의 증가로 까지 이어졌다. 또한, 매년 3회 이상²³⁾의 정기적인 체납일제정리기간에 체납독려인원으로 투입되었던 세무과 40여명의 전 직원의 인력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일반 지방세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도 도움을 주었다.

2. 체납처분예고문의 전산화 개발요인

체납처분예고문을 전산화함에 따라 전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예고서를 발송하여 높은 징수효과와 효율적인 체납관리시스템을 구현하게 된 요인으로 첫째, 오랜 체납관리업무의 경험에 따른 숙련성을 들 수 있다. 10여년간의 체납관리업무에 종사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의 비체계적이고 비정형적인 체납구조를 통찰하고 체납액의 근본적인 원인, 체납관리의 취약성, 체납자들의 일반적인 성향, 일반채권과 조세채권과의 차이 등 체납액의 근본적인 속성·구조 등에 대한 노하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과 체납환경을 통하여 징수기관이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의 징수성적을 내기 위한 방안으로 체납처분예고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체납처분예고서의 전산화를 개발하였다.

둘째, 체납관리담당 조직원들의 노력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이러한 성과를 얻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거대한 체납액과 체납자로 인하여 징수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체납액은 지방세의 전체적인 징수과정에서 불가피한 어쩔수 없는 부산물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체납징수담당 조직원은 체납징수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장성규, 2001) 그러나 이러한 체납환경하에서 주어진 자원으로 더 나은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과 그 노력들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안으로 발전시킨 체납관리담당 조직원들의 노력이 이러한 성과에 일조하였다.

22)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되면 독촉장을 발행하고, 고액 체납자 위주의 재산압류를 하며 정기적인 체납정리 일제기간이 되면 전 직원이 체납독려하여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임.

23) 매년 2월, 5~6월, 10~11월

V. 결 론

지방세 체납관리업무는 크게 체납처분 행정행위와 비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실무 담당자의 업무량 면에서 비행정행위의 납부독려행위는 전체업무량 중 70%를 차지한다. 납부독려방식의 종류에는 직접대면독려방식, 전화독려방식, 체납처분예고서 송달방식 등이 있다. 적은 체납관리인력과 과도한 체납자·체납액 환경하에서는 체납처분예고서 송달방식이 필연적으로 높은 징수효율성을 가진다. 체납처분예고방식이 징수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의 매월 변동성, 과세대상위주의 지방세 전산시스템, 기 수납내역 정리의 일정시간 필요성 등으로 전체 체납자에게 발송되지 못하고 일부 고액체납자에게만 시행되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이러한 체납처분예고서를 전산화시킴으로서 일부 고액체납자에게만 아니라 전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예고서를 송달하는 시스템을 고안·구축하였다. 그 결과 체납액 징수실적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고, 체납관리에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징수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체납관리시스템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많은 체납액·체납자가 있는 국세체납관리분야, 세외수입체납관리분야 등에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체납관리자의 숙련도와 경험에 의한 체납처분예고문의 중요성 인식, 지방세 체납관리의 고질성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예고문 발송의 완전 전산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체납관리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연구·토론 등이 있었다.

체납독려분야에서 체납처분예고서 전산화를 통한 징수성과와 인력절감이 있으나 전 체납자에게 독촉장 우편발송에 대하여는 여전히 많은 수작업이 행해지고 있다.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할 때마다 많은 세무담당직원의 수작업(독촉장 출력 → 체납자 별로 독촉장 절단 → 창봉투에 삽입 및 폴칠 → 우체국 인계)이 필요하다. 지방세 법령 및 지방세 전산구조가 세목별·과세물건별로 구성되어 있어 납세자기준의 고지서 발급이 취약하다. 체납관리분야에서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장이 발행될 때 동일 체납자에게 여러 장, 많게는 수십 장의 독촉장이 발송된다. 동일 체납자에 여러 장의 독촉장이 발송되면 우편요금의 중복성, 체납내역파악의 곤란성 등으로 징수비용과 납세자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1명의 체납자에게 1장의 독촉장화를 개발함으로 해결될 수 있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1명의 납세자에게 여러 필지의 토지가 소유된 경우 토지필지마다 고지서가 각각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1장의 고지서로 발급되고 고지서 상에 토지소유 필지내역을 기재하고 있다. 독촉고지서는 이러한 토지분재산세 고지방식을 응용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독촉장 1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산프로그램 수정문제, 기존 지방세시스템과의 조화 문제, 수납관련 법령과의 저촉문제, 전산화 비용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원천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안을 보면, 각 지방세목자체의 납세공평성과 징수비용 측면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자동차세이다. 승용차의 경우 1980년 이전에는 사치성 물품으로 인식되어 조세저항이 미미했으나 현재는 소형승용차의 경우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조세저항이 만만찮다.²⁴⁾ 또한, 현

재 연간 승용자동차 세액은 일반적인 건물 재산세와 별반 차이가 없어 소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조세의 역진성 문제도 있다. 과세공평성 차원에서 자동차세 자체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징수비용 측면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면허세 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의 경우 10,000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세액을 정하도록 되어있다.²⁴⁾ 적은 세액, 광범위한 납세인원, 그에 따른 광범위한 체납자 수 발생 등으로 징수액에 비하여 많은 징수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면허세액도 최고 45,00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소액의 지방세목들은 징수효율성 측면에서 과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4) 1975년 이전에는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취득세의 징수율보다 높았고, 2005년기준으로 자동차세 징수율은 87.8%로 전체징수율 90.0%보다 매우 낮음.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자동차는 사치재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유하여 징수율이 높았지만 현행 자동차는 필수재화로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소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25) 대전광역시시의 경우 4,500원을 부과하고 있음.

참고문헌

- 권강웅. 2007. 「지방세 강론」, 조세통람사.
- 김동집. 1999. 체납 지방세 징수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 2002. “지방세 납세의식과 지방세수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환. 1997. “지방세 체납억제와 체납세액 징수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호. 2007.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 김혜당. 1999. “지방세 체납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권. 2000. “지방세홍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전광역시
- 김홍권. 2003. “지방세 체납의 관련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학위논문
- 박병목. 1997. “지방세 체납의 원인과 정리방안 - 대구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호. 1998.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임용. 1997. “지방세 체납감소 및 징수관리 개선방안”, 경성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연용. 1999. “체납 지방세 징수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강원도 중심으로 -”,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우영. 2000. “지방재정 확충방안 -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필우. 1996. 「한국조세의 이해」, 세학사.
- 임종만. 2001.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단양군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방안을 중심으로”,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성규. 2001.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 지방세법 제27조 2항.
- 행정자치부. 2006. 「지방세징연감」.
- 홍성운. 2004. 「신월 행정법」, 새롭.
- 홍학균. 1988. “납세자의 조세저항행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Mendez, Ruben P., 1992. “A New Perspective on Global Relations”, *International Public Financ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Computerization Case for Collecting of the Delinquency Local Taxes

Kim, Hong Goune* · Kim, Young Tae**

— <Abstract> —

The delinquency of local governments is rapidly increasing because of a long economic depression and the increase amount of local tax revenues. There is no any consistency or logicity in the delinquent taxes. It is a mere aggregate of delayed sixteen local taxes. These situations make the computerization of collecting process very difficult. The process is not computerized but very labor intensive. The aim of delinquency management is to collect the delayed taxes with cash. The collecting process of delinquency, by necessity, includes a face-to-face meeting between the tax collectors and delinquents. The various behaviors of the delinquents call for various collecting methods of tax collectors.

The tax collectors spend 70% of their time on meeting delinquents except the legal execution. There are three methods for collecting delinquency : face-to-face, communication by phone and previous warning notice through the mail. Mailing notices is the most useful method since it requires the least amount of human resources to collect a huge increase of delinquent taxes.

Many managers of delinquent tax can't use the notice method for all the delinquents, except for a few high delinquent taxes, because of the lack of time and workers. Yu-Seong District Office has constructed a computerized system to deliver notices to all the delinquents automatically in a short time. As a result, Yu-Seong District Office has collected a large amount of delinquency. This efficient delinquency collection system is managed by a few workers and is able to collect a large amount from the delinquents.

This success is the result of the delinquent tax manager's knowledge and experience, constant study to minimizing the delinquent tax, and the free communication with colleagues about the computerization of the notice method. This computerized notice method can also be used by other delinquent managers such as for collecting national delinquency and other delinquent fees.

<Key words> local taxes, delinquency, delinquency management, delinquency warning notice, computerization

* A licensed tax accountant, chief of tax collection, Yu-Seong District Office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Hannam University.